구 분		주 요 내 용
세제지원	・소득·법인세	•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·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
		•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·법인세 감면 (5년 100% + 2년 50% 감면)
	• 취득세·재산세	• 특구로 기업 이전 시 * 취득세 100%(조례 50% 포함), 재산세 5년 100% + 5년 50% 감면
		• 특구 내 창업 시 - (비수도권) 취득세 100%(조례 50% 포함), 재산세 5년 100% + 5년 50% 감면 - (수도권) 취득세 75%(조례 25% 포함), 재산세 3년 100% + 2년 50% 감면
		• 공장 신 • 증설 시 - (비수도권) 취득세 75%(조례 25% 포함), 재산세 5년 75% 감면 - (수도권) 취득세 75%(조례 25% 포함), 재산세 5년 35% 감면
	•부담금 감면	• 개발부담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대체초지조성비 감면
	• 상속세	•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* '업종변경 제한' 및 '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' 폐지
재정 금융 지원	•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	•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
	• 기회발전특구 펀드	•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, 기업 • 인프라 투자 활성화 • 펀드에 일정기간(10년) 이상 투자시 이자·배당소득 세제 혜택(분리과세 9%)
	• 저리금융	•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
	• 지방투자촉진 보조금	•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(지원비율 5%p 가산,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 → 200억원)
규제 특례	• 규제특례제도	•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→ 지방시대 위원회 심의·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
정주 여건 개선	•주택 특별공급	•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주택 우선공급
	•주택 양도세	•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
	• 교육지원	• 외국인학교(유·초·중·고등학교) 설립 지원 • 국내대학의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인적·물적 교류 지원
	• 의료지원	•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 지정·운영